



# CITY OF COALINGA

*The Sunny Side of the Valley*

결의안 번호 3947

## 콜링가 시 주거지 공과금 청구 정책 2020 제의서

### 제1항: 목적

콜링가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 콜링가 시 공과금 청구 관행에 관한 포괄적 정책을 확립하고 지불 의무에 관해 고객에게 통지한다
- 콜링가 시 고객이 기한 내에 납입하도록 촉진한다
- 통지, 수수료 배정, 서비스 중단을 포함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확립한다
- 기한 내 납입 의무를 지킨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 공과금 징수를 위해 콜링가 시에서 사용하는 공과금 청구서, 연체료, 또는 기타 집행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콜링가 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다.

### 제2항. 납부액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사용 후 다음 달 25일에 또는 그 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바로 다음 날이 납입 기한이 됩니다. 25일 오후 5시 30분까지 납부하지 않은 모든 공과금은 체납금으로 간주됩니다.

본 정책 제5항에 따라, 청구서에 기재된 납입 기한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정의 주거지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서비스 중단").

### 소액 체납 제정

체납액이 9.99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서에 이월되고 이럴 경우 연체료나 추가적인 징수 조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3항: 연체료

- 납입 기한을 넘긴 9.99달러 초과 체납금에는 5% 이자가 붙어서 최소 2.50달러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콜링가 시는 체납액이 남아 있는 한 각 달마다 5% 추가 이자를 계속 산정할 것입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콜링가 시는 15달러의 벌금을 산정하여 영업일 기준으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체납 사실과 곧 있을 서비스 중단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는 최종 통지서를 보냅니다.
- 콜링가 시는 본인의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이하라고 선언한 주거지 고객에게 12개월에 한 번씩 체납 공과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 각 고객은 합당한 징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의 계정에 부과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저소득 지위 선서

본인의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이하라고 주장하는 주거지 고객은 콜링가 시에서 제공한 선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저소득 지위를 주장하는 주거지 고객의 선서 진술서 갱신일은 7월 1일입니다.

### **제4항: 대체 지불 약정**

공과금을 정상 납입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없는 고객은 서비스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 대체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콜링가 시는 그 요청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지불 약정이 정당한 조치인지의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청구 기간으로 연장된 지불 약정을 분할 납입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이 분할 납입 계획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분할 납입 계획은 고객이 원래 납입 기한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나누어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입금은 납입 기한 내에 정기 공과금과 합쳐서 내야 합니다. 고객은 분할 납입 계획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각 청구 기간에 발생하는 요금을 연체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은 분할 납입 계획에 의거해 체납 요금을 지불하는 중에는 추후에 체납 요금이 발생했을 때 이 요금을 추가로 분할 납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 납입 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통지서가 서면으로 발행됩니다.

### **제5항: 서비스 중단**

콜링가 시는 체납일이 60일을 넘기 전까지는 체납 계정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콜링가 시는 체납 요금에 관하여 USPS 우편 배송을 이용해 계정 소지자 또는 기타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콜링가 시는 영업일 기준으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체납 및 곧 있을 서비스 중단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된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고객에게 우편 배송합니다. 서면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체납 고객의 이름과 주소
- 체납 금액
- 서비스 중단 사태와 요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지불이나 지불 약정을 해야 하는 기한
- 고객이 서비스 또는 요금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 고객이 체납 요금에 대해 지불 계획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 고객이 재정 지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
-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불 약정을 도입할 수 있는 콜링가 시 직원의 전화번호

전화나 우편으로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콜링가 시는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콜링가 시는 주거지에 가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통지서를 남길 것입니다.

주거지 고객이 지불 약정을 어긴 경우에, 콜링가 시는 5일 한정 서면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발행해서 주거지에 게시할 것이며, 청구서의 원래 납입 기한으로부터 60일 후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서비스 중단 서면 통지서에 명시된 납입 기한까지 체납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처리 수수료 45달러가 산정됩니다.

90일이 지나도 체납 상태이면, 콜링가 시는 계량기를 철거합니다. 체납금을 전액 납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계량기 교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0 (1" 계량기), \$140 (1 ½" 계량기), \$160 (2" 계량기), \$180 (3" 계량기), \$200 (4" 계량기).

#### 서비스 중단 예외 사항

콜링가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 a.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콜링가 시 금융 서비스 부서 영업 사무소의 영업 외 시간
- b. 고객이 청구 요금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와 고객의 이의 제기나 항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동안
- c. 고객이 납입 기한 연장을 허락받은 경우(그러나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d. 고객이 분할 납입 계약을 준수할 뿐 아니라 추후 각 청구 기간에 발생한 요금을 연체 없이 지불한 경우
- e. 서비스를 중단하면 고객의 생명에 위협이 될 거라고 면허가 있는 내과의 또는 외과의가 증명한 경우, 그리고 고객 본인이 정상 지불 기간에 서비스 요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증명하고 체납이 되기 전에 지불 능력이 없는 모든 요금에 대하여 분할 납입 계약을 기꺼이 체결하려는 경우

#### 개별 계량기가 장착된 주거지의 세입자/입주자에게 보내는 통지서

콜링가 시는 공공 서비스 요금을 체납한 입주자에게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0일 전에 서비스 중단을 알리기 위하여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서면 통지서는 세입자/입주자에게 그들이 해당 주소에서 추후 발생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기꺼이 지는 한 체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콜링가 시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체납 금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입자/입주자가 임대 계약서나 임대료 지불 증명서의 형태로 임차인 신분임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 마스터 계량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입주자에게 보내는 통지

콜링가 시는 공공 서비스 요금을 체납한 다세대 주택 입주자에게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0일 전에 서면 통지서를 각 주거지의 문에 걸어놓는 형태로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서면 통지서는 세입자/입주자에게 그들이 마스터 계량기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주소에서 추후 발생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기꺼이 지는 한 체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콜링가 시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콜링가 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후 발생한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물리적 수단이 콜링가 시에게 있는 경우, 콜링가 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제7항: 서비스 복구:

콜링가 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다시 연결할 것이며, 서비스 중단을 초래한 체납금과 체납 수수료가 납입된 후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한 바로 다음 날이 지나기 전에 서비스를 추가 요금 없이 복원시켜줄 것입니다. 콜링가 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공 서비스를 복원시켰거나 콜링가 시 허가 없이 복원시키면 벌금, 추가 요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원해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 후에 복원된 서비스 또는 금요일, 주말, 공휴일에 복원된 서비스에는 100달러의 근무 외 시간 재연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에 중단된 서비스를 복원시키기 위해 제출한 수표의 반환

고객이 체납으로 중단된 공공 서비스를 복원시키기 위한 지불금으로 양도 불능 수표를 제출했고 콜링가 시가 서비스를 복원한 경우, 콜링가 시는 추가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중단된 공공 서비스를 복원시키기 위한 지불금으로 양도 불능 수표를 발행한 고객은 수표 반환일로부터 12개월 동안에는 다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경우 현금, 우편환 또는 자기앞 수표로 체납금을 지불해야만 서비스 중단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 제8항: 재정 지원 요청

- a. 콜링가 시 고객이라면 누구든 콜링가 시가 산정한 수수료나 요금에 대해 또는 수수료가 부과된 지 5일 이내에 또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 지 5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 규정한 시간 제한은 이 정책을 채택한 날로부터 최초 9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b. 이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13일 이내에, 고객은 정상 지불 기간 내에 요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본인의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서 지불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 금융 부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모든 서면 요청을 검토한 후에 그 요청을 거절하거나 요청받은 재정 지원 또는 그 일부를 허가할 것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1. 청구 오류
  2. 계량기 결함 또는 계량기 수치 오독
  3. 체납금을 합당한 기간 동안 분할해서 납입하도록 허가해줄 지에 대한 고려
  4. 금융 부서에서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요소

### 제9항 항소

- a. 이 정책의 제7항에 의거해 금융 부서의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콜링가 시 고객은 금융 부서가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하여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부서의 결정에 대한 항소 심리는 공공사업책임자(Public Works Director) 또는 그 피지명인이 주재합니다.

- b. 고객은 제8항에 의거해 재정 지원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한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이 주재하는 심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 c. 항소 통지서는 항소의 근거와 그 항소의 토대가 되는 모든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 d. 항소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심리 시간과 장소를 항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심리가 열리기 14일 전까지 항소인에게 심리 개최 소식을 통지해야 합니다.
- e. 고객은 공과금 청구서가 부정확하거나 청구 요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부서는 공과금 청구서가 정확하다는 증거와 공과금 청구 요금이 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f.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금융 부서가 산정한 금액을 확인시켜주거나, 체납금이나 벌금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벌금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이 공과금 청구서에 기재된 요금을 감액해주려면 그러한 감액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g.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공공사업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이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 한 체납액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